

◇주요내용

- 가. 정부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정보의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,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(안 제4조제1항).
- 나. 정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(안 제5조제1항).
- 다.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.
- 라. 외교통상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,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등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(안 제15조제1항).
- 마. 정부는 통상조약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,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(안 제17조).
- 바.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외경제 및 통상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둠(안 제21조)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명 박 인

2012년 1월 17일

국무총리 김 황 식

국무위원 권 재 진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1150호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카목(중전의 차목) 중 “자목”을 “차목”으로 한다.

- 마. 「형법」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(강간), 제298조(강제추행), 제299조(준강간, 준강제추행), 제300조(미수범), 제301조(강간등 상해·치상), 제301조의2(강간등 살인·치사), 제302조(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), 제305조(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추행), 제305조의2(상습범)(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)의 죄

제4조제2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
- 5.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
- 6. 「소방기본법」에 따른 구조대·구급대의 대원
- 7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

제4조제3항 중 “즉시 신고”를 “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”로 한다.

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6조(과태료)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가족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이 법 및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보호처분 상습 위반자, 피해자보호명령·임시보호명령 상습 미이행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재발방지를 도모하며,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자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추가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